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611호
----------	--------

2021. 5. 12.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 4. 29. 임준희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21. 4. 30. 복지건설위원회
-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 5. 12.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임준희 의원)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양천구 출생아에게 출산축하 선물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훈)

-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는 출산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신생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b>제7조의2(출산축하선물 지원 등) ①</b>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선물의 내용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어 가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종로구 아기탄생 축하 나무심기 사업, 동대문구 5만원 상당의 용품 지급, 충청북도 음성군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탑재된 미아방지 팔지 지급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